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2003.1.23)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12. 17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12. 17(의안 제 69호)
- 라. 심사일자 :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3.1.22)

2. 제안이유

○. 2001. 7. 6일자로 고시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에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내용

지구명	당초(고시)	변경	비고
신촌Ⅱ지구	기타시설용지 (농업및공장용지)	체육시설 용지	-매립예정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다중 종합체육 시설 조성 및 주민숙원 해소(약 3만평)

4. 검토보고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있음.

나. 신촌Ⅱ지구를 체육시설용지로 하여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매립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다. “시장이 제출한 안에 원안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가. 찬성 : 신청사가 착공되어지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투자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동의

나. 보류 : 용도변경후 이용 계획 및 투자계획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질 때 까지 미결안건으로 의결 동의

7. 심사결과 : 원안가결